#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0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이병진·송옥주·권칠승

복기왕 · 김한규 · 홍기원

민병덕 · 김영배 · 서미화

김준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

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 법률 제 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 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 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행위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 2.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 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한 사 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제4조(금지행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 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재하 는 행위 제20조(벌칙) ① · ② (생 략) 제2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 유)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 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 을 배포한 사람 2.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 판에 게재한 사람